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가단2285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21. 5. 18.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가 2013. 8. 22. D에게 2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원고는 2017. 9. 11. 위 대출금 채권을 전전양수하였다.

나. D의 모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5. 18.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인 피고, H, D, I, J, K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1. 5. 18.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21. 6. 23. L에게 위 부동산을 288,000,000원에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19,446,001원, 이자 67,269,771원, 합계 86,715,7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D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5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형제들이 분담하기로 한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D이 한 번도 보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 가져 갈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D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기여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86,715,772원이고,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치는 880만 원인데, 원고는 그보다 적은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

별 지 목 록

1.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의 2필지 아파트
호
 [도로영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5층아파트

1층 598.44m²

2층 568.47m²

3층 568.47m²

4층 568.47m²

5층 568.47m²

6층 568.47m²

7층 568.47m²

8층 568.47m²

9층 568.47m²

10층 568.47m²

11층 568.47m²

12층 568.47m²

13층 568.47m²

14층 568.47m²

15층 568.47m²

지층 596.43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935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전광역시 서구
 2. 대전광역시 서구
 3. 대전광역시 서구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82319.4 분의 39,786

